

의안번호	2201584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4. 10. 14.
추계번호	24D177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¹⁾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의 제지,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7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33조(보조인)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는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고,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재량규정
4	안 제34조(임시조치), 제54조(비용의 부담)	판사는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게 의료기관 또는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 결정을 받은 친밀한 관계 폭력행위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4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54조(비용의 부담)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받는 친밀한 관계 폭력행위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친밀한 관계인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하여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하였던 사람’으로 정의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미첨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7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	
3	안 제33조(보조인)	×	
4	안 제34조(임시조치), 제54조(비용의 부담)	×	
5	안 제4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54조(비용의 부담)	×	

2. 상세 사유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안 제7조)

- 개정안에 따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폭력행위 제지,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는 친밀한 관계 폭력 사건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에 따라 현장종결하지 못하고 현행범체포 등 신병을 확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신고출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 응급조치 발생 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안 제27조)

- 개정안에 따라 전문가 의견 조회가 가능한 사건을 ‘가정폭력범죄’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전문가 의견 조회 실시 여부는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 등 진단 필요성,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 의견조회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

는 재판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 － 법원이 현행법상 전문가 의견 조회 관련하여 진단전문가에게 지급할 기본 수당은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심리검사 200,000원, 심리상담 1회기 40,000원, 심리진단 250,000원임

□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보조인 선임(안 제33조)

- 개정안에 따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보조인 선임 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현행법상 국선보조인 선임 여부는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서 행위자의 경제력, 비행유형, 비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보조인 선임 발생 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 － 다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5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보조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2024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국선보조인 기본 보수는 1건당 200,000원임

□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안 제34조)

- 개정안에 따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하여 의료기관 위탁,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로 의료기관 위탁·상담위탁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서 행위자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교정의 필요성,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상담위탁 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0조제3항, 제50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 등 위탁·상담위탁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가 각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판사가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감호위탁기관에서 교육 등 보호처분의 결정(안 제46조)

- 개정안에 따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하여 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감호위탁기관에서 교육 등 보호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감호위탁 및 감호위탁기관에서 교육의 경우 기존 사업인 ‘갯생보호활동(2024년 예산 474억원)’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보호처분 중 치료위탁·상담위탁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서 행위자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교정의 필요성,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판사항에 해당하고, 치료 및 상담 과정에서 횡수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비용 또한 각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치료위탁·상담위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0조제3항, 제50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 중 치료위탁·상담위탁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가 각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판사가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